

만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(주거환경개선사업)

가. 변경연혁

고시일	고시번호	주요변경사항	비고
'14. 12. 08.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53호	○정비구역 지정	
'15. 12. 11.	남동구 고시 제2015-177호	○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면적 변경	
'21. 12. 30.	남동구 고시 제2021-212호	○기반시설(주차장) 신설,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	

도시관리계획(만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-	만부구역	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	18,791	-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(변경)

1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제2종일반주거지역	18,791	-	18,791	100.0	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 (변경)

(1) 도로 (변경 없음)

○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격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29	8	국지 도로	89	소2-2	소3-8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86	6	국지 도로	177	소2-229	소2-2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87	6	국지 도로	83	소2-229	소3-86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88	6	국지 도로	100	소2-229	소3-87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89	6	국지 도로	55	소3-88	소3-87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91	6	국지 도로	167	소2-2	소2-229	일반도로	-	'02.05.30	
기정	소로	3	92	6	국지 도로	87	소3-91	소2-229	일반도로	-	'02.05.30	

(2) 주차장 (변경)

○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673	증) 955	1,628		
기정	1	노외1주차장	만수동 1-148번지	370	-	370	'02.05.30	
변경	2	노외2주차장	만수동 1-60번지 일원	198	증) 404	602	'02.05.30	
기정	3	노외3주차장	만수동 1-90번지	105	-	105	'04.10.08	
신설	4	노외4주차장	만수동 1-270번지 일원	-	증) 551	551	-	

○ 주차장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노외2주차장	• 면적 증가(증 404㎡) - 198㎡ → 602㎡	○ 만부마을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증설
4	노외4주차장	• 주차장 신설 - A = 551㎡	○ 만부마을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신설

나) 공간시설 (변경 없음)

(1) 공원 (변경 없음)

○ 공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1,029	-	1,029		
기 정	1	만부1호공원	-	만수동 1-110번지	721	-	721	’02.05.30	
기 정	2	만부2호공원	-	만수동 1-106번지	308	-	308	’02.05.30	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(변경)

1) 일반사항

가) 가구 및 획지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가구계획	○ 폭 4m 이상의 도로 및 지형에 따라 현재 공동체단위가 유지되도록 계획	총 6가구
획지계획	○ 소규모 필지면적 현황을 고려, 별도 수립하지 않음	

나) 최대개발규모

구 분	최대개발규모	계획내용
계획구역 전체	○ 최대개발규모 : 275m ² 이하	○ 최대개발규모 : 275m² 이하 ○ 최대개발규모의 예외 -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(개발규모는 기존 대지규모에 한함) - 관련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으로 시행하는 경우

다) 공동개발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공동 개발	자율적 공동개발 ○ 가구 내 연결된 필지간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. 단,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세장비(단변과 장변의 비)가 1:3 이상이 되는 경우 공동개발 불가	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기정						변경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	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
			위치	면적 (㎡)					위치	면적 (㎡)	
-	A1	1,691	만수동 1-91	74		-	A1	1,691	만수동 1-91	74	
			만수동 1-92	50					만수동 1-92	50	
			만수동 1-93	43					만수동 1-93	43	
			만수동 1-94	66					만수동 1-94	66	
			만수동 1-95	41					만수동 1-95	41	
			만수동 1-96	55					만수동 1-96	55	
			만수동 1-97	104					만수동 1-97	104	
			만수동 1-98	28					만수동 1-98	28	
			만수동 1-99	115					만수동 1-99	115	
			만수동 1-100	29					만수동 1-100	29	
			만수동 1-101	41					만수동 1-101	84	
			만수동 1-102	33					만수동 1-102	33	
			만수동 1-103	98					만수동 1-103	98	
			만수동 1-104	45					만수동 1-104	45	
			만수동 1-105	21					만수동 1-105	21	
			만수동 1-196	45					만수동 1-196	45	
			만수동 1-197	34					만수동 1-197	34	
			만수동 1-200	44					만수동 1-200	44	
			만수동 1-201	22					만수동 1-201	22	
			만수동 1-202	39					만수동 1-202	39	
			만수동 1-203	51					만수동 1-203	51	
			만수동 1-221	74					만수동 1-221	74	
			만수동 1-222	63					만수동 1-222	63	
			만수동 1-223	69					만수동 1-223	69	
			만수동 1-228	59					만수동 1-228	59	
			만수동 1-232	43					-	-	1-101에 합병
			만수동 1-233	31					만수동 1-233	31	
			만수동 1-235	36					만수동 1-235	36	
			만수동 1-236	17					만수동 1-236	17	
			만수동 1-239	38					만수동 1-239	38	
			만수동 1-240	33					만수동 1-240	33	
			만수동 1-280	36					만수동 1-280	36	
			만수동 1-281	33					만수동 1-281	33	
			만수동 1-296	36					만수동 1-296	36	
			만수동 1-297	45					만수동 1-297	45	

[표 계속]

기정						변경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m²)	필지		비고	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m²)	필지		비고
			위치	면적 (m²)					위치	면적 (m²)	
-	A2	1,174	만수동 1-63	53		-	A2	1,283	만수동 1-63	53	주2
			만수동 1-64	33					만수동 1-64	33	주2
			만수동 1-66	33					만수동 1-66	156	
			만수동 1-69	62					만수동 1-69	62	
			만수동 1-70	70					만수동 1-70	70	
			만수동 1-71	92					만수동 1-71	92	
			만수동 1-72	69					만수동 1-72	69	
			만수동 1-73	86					만수동 1-73	86	
			만수동 1-74	142					만수동 1-74	142	
			만수동 1-194	46					만수동 1-194	46	
			만수동 1-198	33					만수동 1-198	33	
			만수동 1-218	40					만수동 1-218	40	
			만수동 1-226	71					만수동 1-226	71	주2
			만수동 1-227	33					만수동 1-227	33	
			만수동 1-250	33					-	-	1-66에 합병
			만수동 1-251	44					-	-	
			만수동 1-252	32					-	-	
			만수동 1-253	37					-	-	
			만수동 1-254	15					-	-	
			만수동 1-260	69					만수동 1-260	69	주2
			만수동 1-305	33					만수동 1-305	33	주2
			만수동 1-414	48					만수동 1-414	48	주2
			-	-					만수동 1-321	85	누락 필지
			-	-					만수동 1-445	21	누락 필지
			-	-					만수동 1-454	41	1-321 에서 분할
-	A3	1,336	만수동 1-75	49		-	A3	1,587	만수동 1-75	49	
			만수동 1-76	8					만수동 1-76	8	
			만수동 1-77	13					만수동 1-77	13	
			만수동 1-78	14					만수동 1-78	14	
			만수동 1-79	103					만수동 1-79	103	
			만수동 1-80	70					만수동 1-80	70	
			만수동 1-81	70					만수동 1-81	70	
			만수동 1-82	98					만수동 1-82	98	
			만수동 1-83	77					만수동 1-83	77	
			만수동 1-84	37					만수동 1-84	77	
			만수동 1-85	133					만수동 1-85	133	

[표 계속]

기정						변경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	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
			위치	면적 (㎡)					위치	면적 (㎡)	
-	A3	1,336	만수동 1-86	133		-	A3	1,587	만수동 1-86	133	
			만수동 1-87	72					만수동 1-87	72	
			만수동 1-88	48					만수동 1-88	48	
			만수동 1-89	36					만수동 1-89	36	
			만수동 1-191	1					만수동 1-191	1	
			만수동 1-192	19					만수동 1-192	19	
			만수동 1-195	33					만수동 1-195	33	
			만수동 1-199	33					만수동 1-199	33	
			만수동 1-219	20					-	-	1-84에 합병
			만수동 1-220	20					-	-	
			만수동 1-238	7					만수동 1-238	7	
			만수동 1-247	33					만수동 1-247	33	
			만수동 1-248	33					만수동 1-248	33	
			만수동 1-261	16					만수동 1-261	16	
			만수동 1-264	49					만수동 1-264	49	
			만수동 1-268	50					만수동 1-268	50	
			만수동 1-269	31					만수동 1-269	31	
			만수동 1-276	30					만수동 1-276	30	
			-	-					만수동 1-322	251	누락 필지
-	A4	2,202	만수동 1-113	90		-	A4	2,652	만수동 1-113	90	
			만수동 1-114	139					만수동 1-114	139	
			만수동 1-115	51					만수동 1-115	51	
			만수동 1-119	40					만수동 1-119	40	
			만수동 1-120	74					만수동 1-120	74	
			만수동 1-121	115					만수동 1-121	115	
			만수동 1-122	106					만수동 1-122	106	
			만수동 1-129	69					만수동 1-129	69	
			만수동 1-130	46					만수동 1-130	46	
			만수동 1-131	92					만수동 1-131	92	
			만수동 1-132	145					만수동 1-132	145	
			만수동 1-133	114					만수동 1-133	114	
			만수동 1-140	33					-	-	1-282에 합병
			만수동 1-141	104					-	-	
			만수동 1-142	121					만수동 1-142	121	
			만수동 1-143	115					만수동 1-143	115	
			만수동 1-144	217					만수동 1-144	217	

[표 계속]

기정						변경	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	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	
			위치	면적 (㎡)					위치	면적 (㎡)		
-	A4	2,202	만수동 1-145	98		-	A4	2,652	만수동 1-145	98		
			만수동 1-146	98					만수동 1-146	98		
			만수동 1-147	36					만수동 1-147	36		
			만수동 1-237	41					만수동 1-237	41		
			만수동 1-266	46					만수동 1-266	46		
			만수동 1-271	68					만수동 1-271	68		
			만수동 1-282	23					만수동 1-282	183		
			만수동 1-283	26					-	-	1-282에 합병 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26	5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27	34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28	33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29	30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30	46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31	50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32	68	누락 지	
			-	-					만수동 1-333	187	누락 지	
				만수동 1-415	49					만수동 1-415	49	
				만수동 1-437	46					만수동 1-437	46	
-	A5	1,644	만수동 1-118	336		-	A5	1,644	만수동 1-118	336		
			만수동 1-123	67					만수동 1-123	67		
			만수동 1-124	65					만수동 1-124	65		
			만수동 1-125	92					만수동 1-125	92		
			만수동 1-126	92					만수동 1-126	92		
			만수동 1-127	98					만수동 1-127	98		
			만수동 1-128	68					만수동 1-128	68		
			만수동 1-134	139					만수동 1-134	139		
			만수동 1-135	98					만수동 1-135	98		
			만수동 1-136	32					만수동 1-136	32		
			만수동 1-137	121					만수동 1-137	121		
			만수동 1-138	32					만수동 1-138	32		
			만수동 1-139	102					만수동 1-139	102		
			만수동 1-275	33					만수동 1-275	33		
			만수동 1-277	33					만수동 1-277	33		
			만수동 1-278	33					만수동 1-278	33		
			만수동 1-294	71					만수동 1-294	71		
			만수동 1-411	66					만수동 1-411	66		
			만수동 1-434	33					만수동 1-434	33		
			만수동 1-435	33					만수동 1-435	33		

[표 계속]

기정						변경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	도면 번호	가구 번호	가구 면적 (㎡)	필지		비고
			위치	면적 (㎡)					위치	면적 (㎡)	
-	A6	1,773	만수동 1-43	137		-	A6	2,014	만수동 1-43	137	
			만수동 1-44	125					만수동 1-44	125	
			만수동 1-45	124					만수동 1-45	124	
			만수동 1-46	122					만수동 1-46	122	
			만수동 1-47	124					만수동 1-47	124	
			만수동 1-48	100					만수동 1-48	100	
			만수동 1-49	118					만수동 1-49	118	
			만수동 1-152	213					만수동 1-152	213	
			만수동 1-153	50					만수동 1-153	50	주4
			만수동 1-154	69					만수동 1-154	69	주4
			만수동 1-156	261					만수동 1-156	261	
			만수동 1-157	66					만수동 1-157	66	주4
			만수동 1-267	49					만수동 1-267	49	주4
			만수동 1-270	54					만수동 1-270	54	주4
			만수동 1-273	39					만수동 1-273	39	주4
			만수동 1-285	122					만수동 1-285	122	
			-	-					만수동 1-337	17	누락 필지 주4,
			-	-					만수동 1-338	224	누락 필지

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A1	○ 필지면적 변경 - 1-101번지 : 41㎡ → 84㎡ - 1-232번지 : 41㎡ → 0㎡	○ 만수동 1-232번지가 1-101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
-	A2	○ 가구면적 변경 - 1,174㎡ → 1,283㎡ ○ 필지면적 변경 - 1-66 번지 : 33㎡ → 156㎡ - 1-250번지 : 33㎡ → 0㎡ - 1-251번지 : 44㎡ → 0㎡ - 1-252번지 : 32㎡ → 0㎡ - 1-253번지 : 37㎡ → 0㎡ - 1-254번지 : 15㎡ → 0㎡ ○ 누락필지 반영 - 1-321번지 : 0㎡ → 85㎡ - 1-445번지 : 0㎡ → 21㎡ ○ 분할필지 반영 - 1-454번지 : 0㎡ → 41㎡	○ 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○ 만수동 1-250번지, 251번지, 252번지, 253번지, 254번지가 1-66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○ 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2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 ○ 1-321번지에서 분할된 필지를 계획에 반영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A3	○가구면적 변경 - 1,336㎡ → 1,587㎡ ○필지면적 변경 - 1-84 번지 : 37㎡ → 77㎡ - 1-219번지 : 20㎡ → 0㎡ - 1-220번지 : 20㎡ → 0㎡ ○누락필지 반영 - 1-322번지 : 0㎡ → 251㎡	○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○만수동 1-219번지, 220번지가 1-84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○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1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
-	A4	○가구면적 변경 - 2,202㎡ → 2,652㎡ ○필지면적 변경 - 1-282번지 : 23㎡ → 183㎡ - 1-140번지 : 33㎡ → 0㎡ - 1-141번지 : 104㎡ → 0㎡ - 1-283번지 : 26㎡ → 0㎡ ○누락필지 반영 - 1-326번지 : 0㎡ → 5㎡ - 1-327번지 : 0㎡ → 34㎡ - 1-328번지 : 0㎡ → 33㎡ - 1-329번지 : 0㎡ → 30㎡ - 1-330번지 : 0㎡ → 46㎡ - 1-331번지 : 0㎡ → 50㎡ - 1-332번지 : 0㎡ → 68㎡ - 1-333번지 : 0㎡ → 187㎡	○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○만수동 1-140번지, 141번지, 283번지가 1-282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○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8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
-	A6	○가구면적 변경 - 1,773㎡ → 2,014㎡ ○누락필지 반영 - 1-337번지 : 0㎡ → 17㎡ - 1-338번지 : 0㎡ → 224㎡	○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○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2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위치 (가구)	구 분		계 획 내 용
-	A1 ~ A6	건축물 용 도	허용 용도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단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총포판매소, 변전소, 장의사 제외)
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○ 도시계획조례 60%이하
		용 적 률		○ 도시계획조례 250%이하
		높 이		○ 관계법령에 따름 - 도로사선 : 건축법 제60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30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 준용 - 일조사선 : 건축법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3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준용
		배 치		○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을 하고,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권장
		형 태 및 외 관		○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평지붕,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며, 지붕의 형태 및 색채 등은 저층주거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주변 건축물과의 가로경관이 고려된 형태로 권장 ○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경우 경사도는 3/10 이상, 6/10 이하로 하고 평지붕으로 조성할 경우,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체 지붕면적의 40% 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, 정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권장 ○ 재료 및 색채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하고, 재료 고유의 질감과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 ○ 건축물의 외벽은 벽돌, 자연석재,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,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계열의 재료의 사용을 제한 ○ 가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에는 에어컨 실외기, 가스배관, 전기 계량기 등 외부 부착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도록 권장(다만,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)

[표 계속]

도면 번호	위치 (가구)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		
-	A1 ~ A6	색 채	○ 주민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마을색을 따르되, 자연적이고 친숙한 느낌의 재질과 따듯한 이미지의 색상 권장 ○ 지붕, 외벽 등 건축물의 주요 부위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마을색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(2010)에 따르도록 권장한다. 1. 지붕 : 마을색 또는 주거지역 색채 범위(RP, R, YR, Y 등)/ 명도4이하 / 채도3 이하 2. 건물 외벽 : 마을색 또는 주거지역 색채 범위(PB, BG, R, B, N, YR, GR 등) / 명도4이상 / 채도4 이하 <마을색 선정 우선순위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 IEC-51 3010-R90B 2.7PB 7.0 / 2.5 </td><td style="width: 25%;"> IEC-48 5020-B70G 4.9BG 5.0 / 2.8 </td><td style="width: 25%;"> IEC-10 3020-Y80R 8.7R 6.6 / 3.6 </td><td style="width: 25%;"> IEC-44 2005-B20G 4.8B 8.1 / 1.2 </td></tr> <tr> <td>1순위</td><td>2순위</td><td>3순위</td><td>4순위</td></tr> </table> <권장색채-예시>	IEC-51 3010-R90B 2.7PB 7.0 / 2.5	IEC-48 5020-B70G 4.9BG 5.0 / 2.8	IEC-10 3020-Y80R 8.7R 6.6 / 3.6	IEC-44 2005-B20G 4.8B 8.1 / 1.2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
IEC-51 3010-R90B 2.7PB 7.0 / 2.5	IEC-48 5020-B70G 4.9BG 5.0 / 2.8	IEC-10 3020-Y80R 8.7R 6.6 / 3.6	IEC-44 2005-B20G 4.8B 8.1 / 1.2								
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							

4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대지안의 조경	○ 건축법 제42조(대지안의 조경)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 ○ 공동개발시 가급적 가로에 면하도록 조성	
대지안의 공지	○ 건축법 제58조(대지안의 공지)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 ○ 공동개발시 가급적 가로에 면하는 전면공지 확보 노력	
환경친화적 마을조성	○ 옥외광고물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인천광역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를 준수 ○ 옥외광고물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마을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을 권장 ○ 인천광역시 「친환경·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」 준수하며,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해 자연지반의 보전 및 옥상녹화, 벽면녹화, 녹색주차장,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신·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권장 ○ 가로면 담장은 가급적 미설치하고, 부득이 설치시 최고높이를 1m이하로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○ 가로변에 면하지 않고, 이웃건물과 면하는 측면, 후면 담장설치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, 낮고 친환경적인 담장 조성을 권장	
주민협정	○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꾸어 가기 위한 사항들을 주민협정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함으로서,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유지·관리시스템 마련 권장 ○ 구역 전체 또는 부분을 하나의 협정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, 지속적인 환경개선, 특성강화 및 주민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항목을 주민 스스로 선정하고,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협정서의 형태로 구체화하도록 권장 ○ 주민협정의 내용은 지역의 경관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“권장사항”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, 체결된 주민협정의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음	

5)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경미한 사항 결정	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름 ○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·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·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	